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1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소방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 군지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의 설치·운영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부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의 설립 및 임용권을 도지사로 일원화 (안 제2조, 제10조, 제12조)
-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통일 (안 제3조)
- 의용소방대 운영주체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(안 제7조, 제8조, 제19조, 제21조, 제24조, 제35조)
- 의용소방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·수당·활동보조비·보상금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규정 마련 (안 제22조 내지 제29조)
- 재해보상금의 피청구자 및 결정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 (안 제30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그동안 시와 군지역이 이원화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을 일원화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제5조 제3호 "대장·부대장의 정년" 과 제31조 제4항 "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의 정년" 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하며
- 제14조의 해임사유 중 "임기만료자 및 정년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." 라고 한 것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